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44 발의연월일: 2024. 6. 5.

발 의 자:정준호·강훈식·김남근

김한규 · 모경종 · 민형배

박홍배 · 용혜인 · 이광희

이연희 · 정성호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사에게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도록 하는 충실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물적 분할 등과 같은 자본거래 과정에서 이사의 행위가 회사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나 단지 주주 사이에서 부의 이전의결과만 가져오는 경우 이로 인해 특정 주주에게 피해가 발생하더라도이사의 임무해태가 아니어서 이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바, 이와같이 기업 가치는 변화가 없거나 심지어 증가하지만 일반주주의 가치가 저하되는 경우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사이의 이해상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입법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이사의 충실의무의 대상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추가함으로 써 회사에는 영향이 없더라도 일반주주의 가치가 훼손되는 경우 이사 에게 주주에 대한 보호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382조의3).

법률 제 호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2조의3 중 "會社를"을 "주주의 비례적 이익과 회사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第382條의3(理事의 忠實義務) 理	第382條의3(理事의 忠實義務)
事는 法令과 定款의 規定에 따	
라 <u>會社를</u> 위하여 그 職務를	주주의 비례적 이익과 회사를
忠實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